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95호 2022. 9. 8.(목)

차 례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9호 2023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—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119호

2023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

「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9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명 : 2023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

2. 목 적

-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적용기간 : 2023. 1. 1. ~ 2023. 12. 31.

4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액 : 10,900원(시급)
- 생활임금 적용항목 : 기본급+제수당(통상임금)
 - 급식보조비, 교통비 등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제수당 포함 (단, 초과근무수당, 연장근로 수당 제외)
- 생활임금 적용대상
 -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노동자
 -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

* 생활임금 적용제외자

-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사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
-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
-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

5. 기 타

- 서구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 : 기업지원일자리과(일자리정책팀, 560-0862)